

#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##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20. . .  
제출자 : 구미시장

### 1. 제안이유

구미시 국궁장(금오정)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궁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,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들의 여가 생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: 국궁장(금오정)의 위치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신설

- 체육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(안 별표 1)

| 구분       | 위치            | 기능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
| 국궁장(금오정) | 구미시 3공단1로 219 | 국궁 |

-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(안 별표 3)

| 구분       | 평일  | 토·일·공휴일 | 비고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|
| 국궁장(금오정) | 무 료 |         |    |

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,  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##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,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## 체육시설의 범위(제2조 관련)

### 1. 전문체육시설

| 명 칭            | 위 치                       | 기 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박정희체육관         | 구미시 박정희로 375-19 (광평동)     | 농구, 배구, 각종행사                    |
| 복합스포츠센터        | 구미시 박정희로 375-19 (광평동)     | 볼링, 배구, 농구 등, 각종행사              |
| 시민운동장<br>주경기장  | 구미시 박정희로 375-22 (광평동)     | 육상, 축구, 각종행사                    |
| 시민운동장<br>보조경기장 | 구미시 박정희로 375-20 (광평동)     | 육상, 축구, 각종행사                    |
| 복합체육시설         | 구미시 박정희로 375-20 (광평동)     | 인라인롤러, 씨름, 농구, 배드민턴, 체육회관 회의실 등 |
| 금오테니스장         | 구미시 산책길 105 (남통동)         | 테니스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구포동<br>생활체육공원  | 구미시 옥계2공단로3길 133<br>(구포동) | 축구, 정구, 테니스, 농구, 족구, 각종행사       |
| 국궁장<br>(금오정)   | 구미시 3공단1로 219             | 국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2. 생활체육시설

| 명 칭             | 종 류 (종 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읍·면·동<br>생활체육시설 |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, 게이트볼장, 족구장, 야외운동기구 등<br>관할 읍·면·동장이 관리하는 실내·외 체육시설 |

[별표3]

체육시설 이용료(제9조 관련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준     |       | 평일                      | 토·일·공휴일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금오테니스장                       | 실 외     | 주간    | 4,000원                  | 5,000원  | ○ 이용시간<br>- 1면, 1회, 1시간 적용<br>- 조기(06:00~09:00)<br>- 주간(09:00~18:00)<br>- 야간(18:00~22:00)<br><br>○ 조기·야간은<br>조명사용료 포함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조기·야간 | 6,000원                  | 7,000원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실 내     |       | 12,000원                 | 15,000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구포동<br>생활체육공원<br>[테니스(소프트)장] | 실 외     | 주간    | 4,000원                  | 5,000원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조기·야간 | 6,000원                  | 7,000원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실 내     |       | 12,000원                 | 15,000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복합<br>스포츠센터<br>(볼링장)         | 일 반     |       | 3,000원                  | 3,200원  | ○ 이용방법<br>- 1레인, 1게임기준<br>- 운영(10:00~23:00)<br><br>○ 휴무일<br>- 매주 월요일<br>- 신정, 설·추석연휴<br>- 근로자의 날<br><br>○ 락커 임대는<br>구비된 경우 적용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청소년     |       | 2,500원                  | 2,800원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어린이     |       | 2,000원                  | 2,500원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화료(1회) |       | 1,000원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락커(1개월) |       | 중 : 3,000원 / 대 : 5,000원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궁장(금오정)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무 료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○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 시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은 하나만 적용한다.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  1. 유공자와 그 배우자
  2.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
  3.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  1. 의상자(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상자의 활동보조자 1명 포함)
  2.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
  3.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  1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활동 보조자 1명 포함)
  2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,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  
(구미시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(발급 3개월 미만)를 제시하여야 한다.)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 
(한부모가족증명서(발급 3개월 미만)를 제시하여야 한다.)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  1. 등록포로
  2.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 ①, ②, ④ 생략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 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7조 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 ② ~ ⑥ 생략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생략

| 소 관 부 서     |     | 체육진흥과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과 장 | 지 대 근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| 강 호 근<br>(480-5011) |